

瑞山市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審 查 報 告 書

1. 審 查 經 過

- 가. 提出日字 : 1999. 7. 23
- 나. 提出者 : 瑞 山 市 長
- 다. 回附日字 : 1999. 7. 23
- 라. 上程日字 : 1999. 7. 30

2. 提案說明要旨(提案說明 : 自治行政課長 方景泰)

가. 提案理由

- 자치역량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과 기능」 중심의 2차구조 조정 추진에 따라
 - 이와 관련한 일부정원을 감축하려는 것임.

나. 主要骨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 감축
 - 총정원 : 897명 ⇒ 814명(83명 9.25% 감축)
 - [집행기관 : 882명 ⇒ 799명(83명 감축)
 - 의회사무국 : 15명 ⇒ 15명(변동 없음)

- 감축되는 83명은 1년차(99년) 27명, 2년차(2000년) 28명, 3년차(2001년) 28명 등 연차별로 균분 감축하고,
 - 99년도 27명 감축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70명을 2000.7.30일까지
 - 2000년 28명 감축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42명은 2001.7.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함.

- 정원 감축으로 인한 초과 현원의 신분 인정기간은

99년도

정원 27명 감축분에 대한 초과 현원의 경우

- 2000. 12. 31일까지(별정직 : 2000. 6. 30일까지)

2000년도

정원 28명 감축분에 대한 초과 현원의 경우

- 2001. 7. 31일까지(별정직 : 2001. 1. 31일까지)

2001년도

정원 28명 감축분에 대한 초과 현원의 경우

- 2002. 7. 31일까지(별정직 : 2002. 1. 31일까지)로 정하도록 함.

- 연차별로 감축되는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매년 7.31일까지 정하도록 함.

3. 專門委員 檢討意見 要旨

- 이 조례심사에 앞서
 - 지난해 9월 실시한 1차 구조조정에 따라 감축된 111명중 퇴직자 현황, 현재보직 및 근무현황과 앞으로의 조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 이번 조례개정으로 연차별로 감축되는 83명에 대한 직급별 정원에 대한 설명과
 - 감축되는 공무원을 민간위탁과 연계하여 고용을 승계하는 방안등 대안은 없는지 설명이 요구됨.

4. 主要質疑 및 答辯要旨 : 생략

5. 討論 및 少數意見 : 없었음

6. 審査結果 : 원안대로 가결

의안번호	제 01 호
의 결 년 월 일	1999. 7. . (제 회)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출 자	서 산 시 장
제출년월일	1999. 7. 23 .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81
----------	----

제출년월일 : 1999. 7. 23.

제 출 자 : 서 산 시 장

개정이유

- 2차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일과 기능중심으로 조직의 불합리한 고비용 저효율체제를 생산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 유사중복 기능 통폐합, 사무의 민간위탁 및 읍면동 기능전환등을 추진함에 있어, 이와 관련한 정원을 감축하는 것임.

주요골자

-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 897명중 83명을 감축하여 814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 882명중 83명을 감축하여 799명으로 조정함(안 제2조).
- 안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산시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99년도에 27명, 2000년 및 2001년도에 각각 28명을 균형있게 감축하고자 '99년도 27명 감축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70명[표 1]을 2000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 하고, 2000년도 28명 감축분에 대한 정원의 총수 842명[표 2]을 2001년 7월 31일까지 적용하도록함(부칙 제2조).
- 부칙 제2조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0년 6

월 30일)까지, 부칙 제2조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1년 1월 31일)까지, 안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부칙 제3조)

-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안 제2조 및 부칙 제2조표 2의 규정에 대한 기관별·직급별정원(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규칙)을 각각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하도록 함(부칙 제4조)

□ 기타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03조제1항 및 제2항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 충청남도 행정 12200-1726('99. 6. 15)호(2단계 구조조정 추진지침)

○ 년차별 정원 감축현황 및 초과현원 인정기간

년 도 별	현 정 원	감축정원	조정정원	초 과 현 원 인 정 기 간
계		△83		
'99년	897명	△27	870명	일반직 : 2000. 12. 31까지 별정직 : 2000. 6. 30까지
2000년	870명	△28	842명	일반직 : 2001. 7. 31까지 별정직 : 2001. 1. 31까지
2001년	842명	△28	814명 (최종정원)	일반직 : 2002. 7. 31까지 별정직 : 2002. 1. 31까지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산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897명”을 “814명”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882명”을 “799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수에 관한 적용례) 서산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 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 31일까지는 표 1을, 2001년 7월 31일까지는 표 2를 각각 적용한다.

[표 1]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870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55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

[표 2]

구 분	정 원
정 원 의 총 수	842명
1. 집행기관의 정원	827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5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표 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7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 30일)까지, 부칙 제2조표 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1년 1월 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28명(집행기관의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 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직급별정원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및 부칙 제2조표 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정원은 각각 매년 7월 31일까지 정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생 략)</p> <p>제2조(정원의 총수) 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u>897명</u>이며,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집행기관의 정원 : <u>882명</u></p> <p>2. (생 략)</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원의 총수) ----- ----- <u>814명</u>----- -----</p> <p>1. ----- : <u>799명</u></p> <p>2. (현행과 같음)</p>